



일본의 축산물 가격안정제도

- 자돈(仔豚) 부문 -

전 중 룰 역

1. 근 거

- 자돈수급조절 대책 사업 실시 요강 (昭和 '56년 7월 16일)
- 사단법인 중앙축산회 정관 및 업무규칙
- 각 현(縣) 지정단체 정관, 업무규칙 및 업무방법시

2. 목 적

농업협동조합, 배합사료 안정기금협회 등을 통하여 자돈생산 농가를 조직화 하고 돈육 및 자돈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돈의 수급조절을 행함으로써 돈육의 안정적 공급과 양돈경영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 함.

3. 제도의 구성

(1) 실시기관

중앙축산회 및 현(縣) 지사가 지정한 단체

(2) 사업의 개요

지정단체는 자돈생산용 자돈(雌豚) 사육자와 3년간을 1업무 대상연간으로 하는 자돈수급조절 교부금 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계약사육자로 부터 적립금을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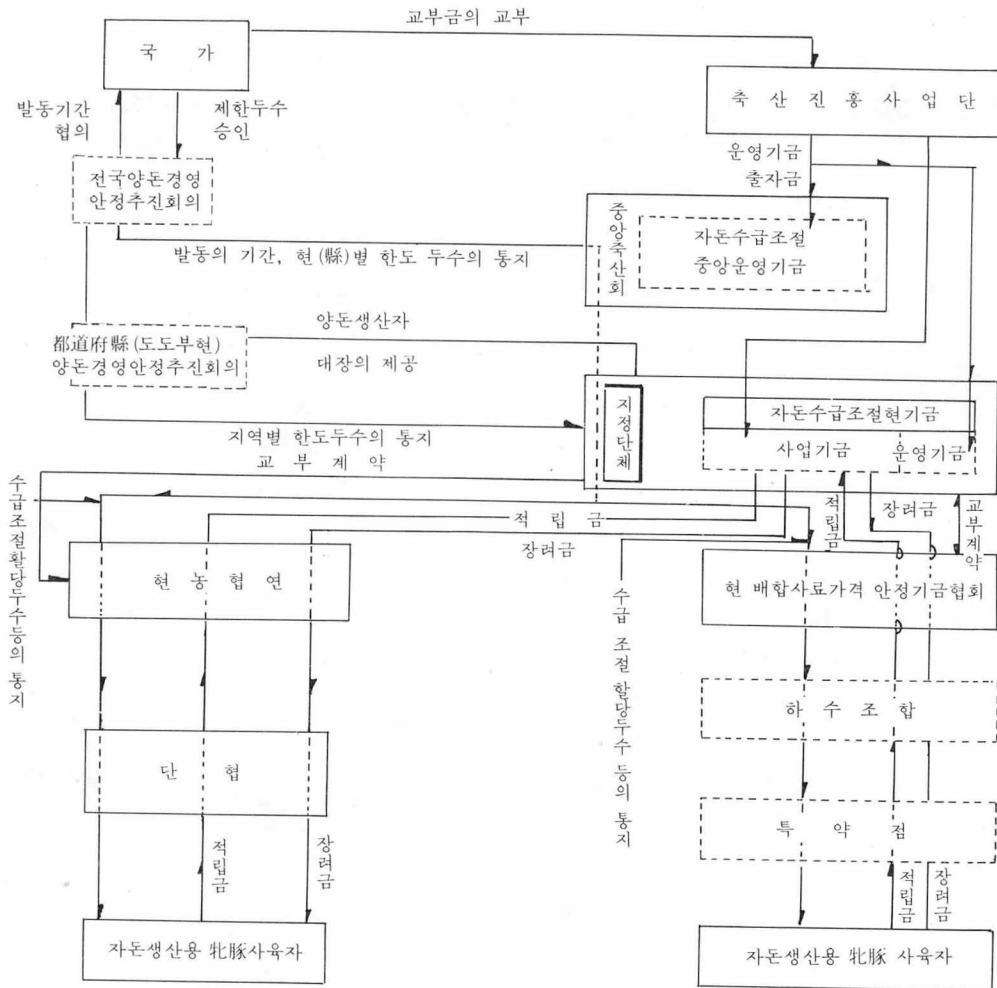
지정단체는 중앙축산회의 지정에 따라 자동수급조절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 확인을 한 후 사업기금에서 계약사육자에게 자돈수급조절 교부금을 교부한다.

(3) 사업의 대상자

자돈생산용 雌豚(자돈)을 원칙으로서 1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4) 수급조절 교부금의 교부

돈육 및 자돈의 이상공급 과잉이 예견된 때에는 자돈생산용 雌豚(자돈)의 도살장려 교부금 공급, 공급 부족이 예견된 때에는 도입장려 교부금



〈그림〉 일본의 자돈수급조절의 구성

(도입이란? 우리나라에서 수입과 혼동하여 쓰고 있는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도입이라 하고,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들여올때 씀) 지정단체로부터 교부한다.

금액을 사업기금으로서 적립한다.

* 부담구분(負担区分)

- 축산진흥사업단 : 1/2
- 가입 생산자 등 : 1/2

(5) 보조재원

3개년의 업무 대상은 연간에 있어서 예상되어 지는 자돈생산 및 가격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4. 수급조절 교부금

- (1) 도살장려 교부금 : 20,000円 (엔)
- (2) 도입장려 교부금 : 2,000円 (엔)